

화재사건에 대한 PL법 대처방안

[A general plan for the Product liability Law]

연구자 : 경기지방경찰청 박기훈 · 문용수
삼성전자 김용수



1. PL법의 도입 배경	96
2. PL법 해석	96
3. PL법 시행 전 · 후의 변화	97
4. 화재 조사 · 감정의 변화 예고	98
5. 화재현장의 PL법 사례	98
6. 결론	99

1. PL법의 도입 배경

- (1) 제조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의식변화에 따른 요구
(소비자보호 측면)
- (2) 제조물에 대한 개방화된 국제화 시대의 필수요건
(기업의 경쟁력 및 국제적 조화 측면)
- (3) 사고 피해에 따른 민사분쟁에 대한 원인규명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
(진실 규명적 측면)

2. PL법 해석

- (1) 적용
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한 제품
- (2) 대상
제조물이란?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, 완제품, 부품, 원재료를 불문하고 동산이면 대상, 전기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
- (3) 제외대상
 - 1) 부동산(아파트, 빌딩 등)
 - 2) 미가공 농산물(임·축·수산물 등)
 - 3) 소프트웨어·정보 등 지적재산권
- (4) 책임
제조물의 제조·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음
- (5) 제조물의 결함
설계상의 결함, 제조상의 결함, 표시상의 결함,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미확보
- (6) 손해배상의 범위
신체·건강 또는 재산상의 모든피해
- (7) 면책
 - 1) 현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
 - 2) 공급당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 결함이 발생한 경우

- 3) 원료, 부품 제조의 경우 완성품 제조업자의 지시로 결함이 발생한 경우
- (8) 특약 : 제조물책임법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
- (9) 소멸시효
 - 1)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
 - 2) 제품을 공급(유통)한 날로부터 10년 경과
- (10) 입증책임
 - 피해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

3. PL법 시행 전 · 후의 변화

시행 전	시행 후
제조업자의 고의·과실 (주관적인 요건) ↓↓ 손해의 발생 ↓↓ 제조업자의 고의·과실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	제조물의 결함 (객관적인 요건) ↓↓ 손해의 발생 ↓↓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
제조업자의 소극적 제품의 A/S나 불만의 시정, 수리, 교환	사고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사고처리 및 원인 규명 활동

- (1) 화재사건에 대한 피해자(소비자)의 의식 변화로 발화원인 규명에 대한 의문점 및 요구사항 증대로 조사기관의 민원 증가 예상
- (2) 기업의 철저한 제조물책임방어(PLD) 대책으로 제품관련 철저한 입증자료 수집 및 소송대응책으로 PL관련 민사분쟁 발생시 국가 조사기관의 현장조사 및 감정 결과를 뒤집는 판례증가 국가 조사 기관의 신뢰성 하락 예상
- (3) 민사 소송건의 증가로 보험사 및 변호사의 외주를 받는 민간 화재조사 및 감정 기관의 등장으로 국가 기관과의 대등적인 입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

- ♣1. 소속기관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소극적인 의식·태도에서 ◉ 독립적인 위치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의식·태도로 변화
- ♣2. 조사·감정 방법에 비과학적인 요소 존재 ◉ 이론 및 실험에 근거한 조사·감정 방법 및 결과로 변화

4. 화재 조사 · 감정의 변화 예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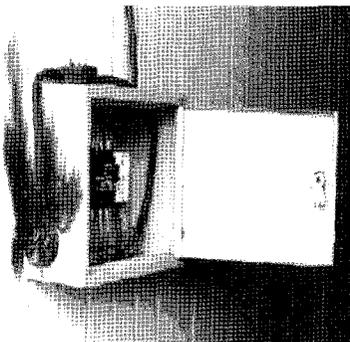
- (1) 민원에 대비한 조사 · 감정기관의 의식 · 태도 및 과학적 방법으로 변화
- (2) 조사 · 감정관의 전문화 및 지속적인 학문 연구 활동으로 변화
 - 1) 조사 · 감정관은 화재조사라는 특수분야의 학위, 교육, 훈련, 현장경험을 통한 전문가로 변화
 - 2) 조사 · 감정관은 조사 감정 방법의 타당성, 공정성을 유지하여 소속기관의 조사 · 감정기관의 신뢰성을 확보
- (3) 민간 화재조사 · 감정기관의 등장에 대비
 - 1) 민간 화재조사 · 감정기관의 등장은 현 화재 조사 · 감정기관의 결과에 반하는 입장이 존재하는 의미로, 현 조사기관 조사 · 감정서의 완벽성 추구
 - 2) 민간 화재조사 · 감정기관의 자격 요건에 상응하는 현 조사 · 감정기관의 물적 · 인적 자격요건으로 변화

5. 화재현장의 PL법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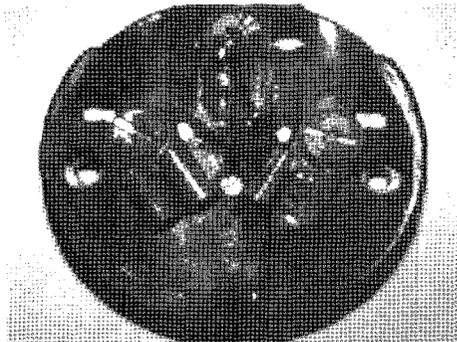
현 사례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강원소방본부 홍이표님이 자료를 활용하여 재 구성한 사례임. (※ 현 사례는 PL법 시행 이전 생산 제품으로 PL법 대상이 아님)

(1)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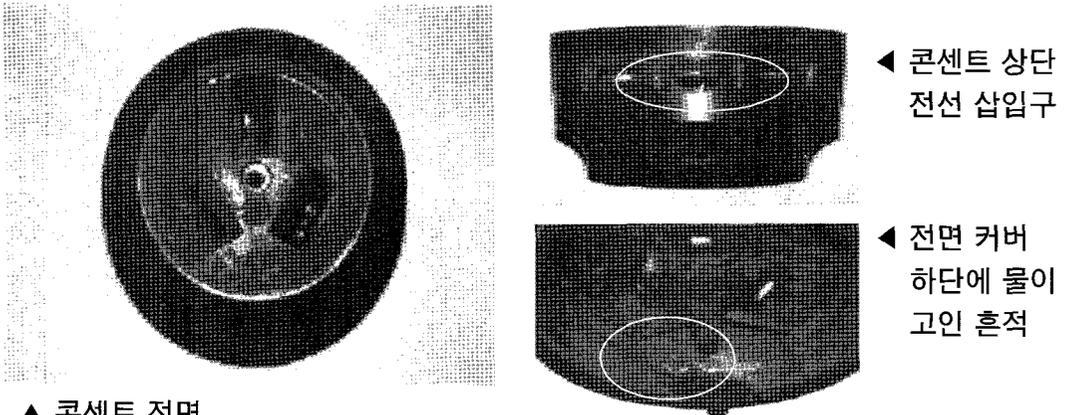
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 차량 정비관련 작업장에 설치된 벽면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임.



▲ 분전반 측면에 설치된 단상 콘센트에서 발화한 사진임.



▲ 표시 부분의 콘센트 상단으로 전선이 삽입됨.



▲ 콘센트 전면

- 1) 발화원 : 옥외에 설치된 콘센트 상단의 단자 구멍을 통하여 빗물 등이 침투하여 단자간의 도전로를 형성하여 극간 절연파괴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
- 2) PL법 적용 : 전면 커버에 옥외에서 사용시 단자부분을 하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설치 조건과 경고 및 위험 등을 미표시한 것으로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는 문제임.

6. 결론

이상과 같이 PL법 시행 후 제품관련 화재사건에 대한 피해자 (소비자), 제조업체 등의 환경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화재조사·감정에 대하여 전문성, 타당성, 공정성, 완벽성을 추구해야 하며, 조사·감정기관은 민간 감정기관에 대비하여 물적·인적 자격요건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.